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AA1 호반 씨밋 인천 검단2차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I 공급개요 및 일정

1) 공급규모

- 가.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1블록
 나.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25층 8개동 총 71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다. 주 택 형 : 72㎡A, 72㎡B, 80㎡A, 80㎡B, 84㎡A, 84㎡B, 93㎡A, 93㎡B, 97, 107

2) 기관별 공급세대수 배분(안)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72A	72B	80A	80B	84A	84B	93A	93B	97	107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괄호안의 숫자는 예비 입주자 세대수)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인천광역시	1(1)	1	-	-	2(1)	1	-	-	-	-	5(2)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	-	-	-	1	-	-	-	-	-	1
		소계	1(1)	1	-	-	3(1)	1	-	-	-	-	6(2)
	장기복무 제대 군인	인천광역시	1(1)	1	-	-	2(1)	1	-	-	-	-	5(2)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	-	-	-	2(1)	-	-	-	-	-	2(1)
		소계	1(1)	1	-	-	4(2)	1	-	-	-	-	7(3)
	중소기업 근로자	인천광역시	1(1)	1	-	-	3(1)	1	-	-	-	-	6(2)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	-	-	-	2(1)	-	-	-	-	-	2(1)
		소계	1(1)	1	-	-	5(2)	1	-	-	-	-	8(3)
	북한이탈 주민	인천광역시	1	1	-	-	1	-	-	-	-	-	3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	-	-	-	1	-	-	-	-	-	1
		소계	1	1	-	-	2	-	-	-	-	-	4
	우수선수	인천광역시	1	1	-	-	1	-	-	-	-	-	3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	-	-	-	1	-	-	-	-	-	1
		소계	1	1	-	-	2	-	-	-	-	-	4
	국가 유공자 등	인천광역시	1(1)	1	-	-	2(1)	1(1)	-	-	-	-	5(3)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	-	-	-	2(1)	-	-	-	-	-	2(1)
		소계	1(1)	1	-	-	4(2)	1(1)	-	-	-	-	7(4)
	장애인	인천광역시	1(1)	1(1)	-	-	3(1)	1(1)	-	-	-	-	6(4)
		서울특별시	1	1	-	-	2(1)	-	-	-	-	-	4(1)
		경기도	1(1)	1(1)	-	-	2(1)	-	-	-	-	-	4(3)
		소계	3(2)	3(2)	-	-	7(3)	1(1)	-	-	-	-	14(8)
	소계		9(6)	9(2)	-	-	27(10)	5(2)	-	-	-	-	50(20)

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공급내역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통지 예정입니다.

② 지역배분(인천광역시 50% 우선)에 맞추어 해당지역별 추천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지역별 신청자 미달 시 타지역 신청자를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분양 일정(예정)

구분	일자		참고 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19.11.07.(목)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
건본주택 개관	2019.11.08.(금)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329번지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 청약	2019.11.12.(화) 08:00~17:30	아파트투유 인터넷청약
	건본주택 방문청약	2019.11.12.(화) 10:00~14:00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19.11.21.(목)		당사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 게재
정당계약 기간	2019.12.03.(화) ~ 2019.12.05.(목) 10:00~16:00		당사 건본주택

※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 중에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에서 신청(국민은행 가입자도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아파트투유에서 신청하여야 함)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을 위해 반드시 신청일 전 은행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III

특별공급 유의사항

1)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자격요건	•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 별 신청자격을 갖춰야 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국가유공자), 제3호(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특별법 대상자, 우수 선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 별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현재 잔액 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며,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점)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1세대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 (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